第 7 號

第250回國會 (定期會)

教育委員會會議錄

國會事務處

日 時 2004年11月22日(月)

場 所 教育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 1.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 2. 地方敎育自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 3. 地方教育讓與金法廢止法律案
- 4. 地方教育讓與金管理特別會計法廢止法律案
- 5. 地方敎育財政交付金法中改正法律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
- 6. 地方教育自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

審査된案件

2. 地方教育自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1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 5
3. 地方教育讓與金法廢止法律案(정부 제출)			
4. 地方教育讓與金管理特別會計法廢止法律案(정부 제출)	2.	地方教育自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5
5.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中改正法律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김영숙・공성진・김양수・안상수・엄호성・임인배・김문수・서상기・이계진・박혁규・이재오・정병국・배일도・허천・안명옥・김애실・이덕모・정종복・이재웅・주성영 의원 발의)	3.	地方敎育讓與金法廢止法律案(정부 제출)	•5
호성·임인배·김문수·서상기·이계진·박혁규·이재오·정병국·배일도·허천·안명옥·김애실·이덕모·정종복·이재웅·주성영 의원 발의)	4.	地方敎育讓與金管理特別會計法廢止法律案(정부 제출)	.5
실·이덕모·정종복·이재웅·주성영 의원 발의)	5.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中改正法律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김영숙・공성진・김양수・안상수・	엄
6. 地方教育自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김영숙・박순자・홍창선・이군현・ 허천・서상기・이계진・안상수・엄호성・진수희・안명옥・정병국・임인배・박진・이덕모 의원 발		호성 · 임인배 · 김문수 · 서상기 · 이계진 · 박혁규 · 이재오 · 정병국 · 배일도 · 허천 · 안명옥 · 김	애
허천·서상기·이계진·안상수·엄호성·진수희·안명옥·정병국·임인배·박진·이덕모 의원 발		실·이덕모·정종복·이재웅·주성영 의원 발의)	.5
	6.	地方教育自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김영숙・박순자・홍창선・이군현	<u>.</u>
의)5		허천·서상기·이계진·안상수·엄호성·진수희·안명옥·정병국·임인배·박진·이덕모 의원	발
		의)	.5

(10시17분 개의)

○**위원장 황우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국회(정기회) 제7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금 국민들에게 심대한 우려를 끼치고 있는 수능 부 정 문제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이번 수 능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많은 걱정을 끼쳐 드려 우선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아시는 것입 니다마는, 제가 간략하게 사건 개요를 말씀드리고, 저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어떻게 사전 대응을 했는가 하는 것에 이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의 경찰 수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광주동부경찰서에서 첩보를 입수해서 수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것이 11월 18일이었습니다. 광주 S고등학교 L군 등 6명을 11월 21일 구속하고, 3명을 추가조사 중에 있습니다. 휴대전화 구입과정 및 통신자료 확인을 통해서 가담자 신병 확보를 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희 교육인적자원부가 사전 대응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이용 부정행위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토록 교육과정평가원에 지시한 것이 지난 9월 1일이었습니다.

정통부에 시험장 주변 휴대전화 기지국 잠정 폐쇄 가능성을 같은 날인 9월 1일 저희들이 질의 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통부에서는 경제 활동 지장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중단 사유에 해 당되지 않는다고 가능하지 않다는 답을 주었습니 다.

아울러 10월 19일 2005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시·도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여기에서 각 교육청별로 무선 통신기기소지 및 기타 부정행위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고, 부정행위 관련 수험생 유의사항에 대해 고등학교 홍보 및 팝업 창 게재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 의를 10월 29일 했습니다.

10월 29일, 같은 날 경찰청의 사이버테러대응 센터에 부정행위 방지대책 협조를 요청하고 인터 넷 게시판, 이메일 등을 통한 부정행위 방지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11월 9일 광주시 일대 수능 부정행위 브로커 의혹 기사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 관 련 내용 전파 및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 니다.

11월 15일에는 경찰청에 부정행위 인터넷 광고 차단 및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상 저희 교육인적자원부의 사전 대응 내용이 었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계 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 다.

휴대전화 이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책반장은 저희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교육 인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한국교육 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 경찰청 관계관으로 대 책반이 구성되어있습니다.

아울러 내일로 예정하고 있는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해서 향후 대책 및 구체적인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부정행위와 관련된 처벌과 연관해서 저희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행위 가담 학생은 해당 학교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부정행위 확인 시 해당 시험의 무효처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사법처리를 저희들이 청하고 있습니다.

보완대책을 아울러 강구하고 있습니다.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내년 1월 중에 발표하겠습니다.

휴대전화 전파차단기, 전자검색대, 금속탐지기 등 기술적 방지방안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감독관 증원 및 시험지 유형의 다양화 등 시험 관리방안에 관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정행위자에 대한 향후 응시자격 제한 강화 방안으로 저희들은 정책토론과정에서 3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검토해서 함께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능과 연관해서 국민 여러분께 많 은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 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우여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고요.

권철현 위원님!

○權哲賢 委員 한나라당의 권철현 위원입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서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 렀는가, 대학 입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브로커 와 짜고 모바일을 통한 부정행위까지 하는 지경 에 이르렀는가, 우리 사회의 도덕적 불감증이 이 렇게 되어 버렸는가 하는 안타까움을 먼저 느낍 니다.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어디에 책임 소재가 있느냐 하는 것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일반인들도 아니고 나이 어린 학생들, 갓 성인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이런 일에 가담했다고 하는 사회 풍조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사회 전반에 관한 반성과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특히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목적만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는 순간 몸이 오싹했습니다.

옛날 미국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났을 때 도청 장치를 했던 그 변호사들이 검찰에 불려 나가서 "우리는 그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생각하지 않았 다. 단지 대통령 선거에 이겨야 된다는 것만 생 각했다"고 얘기했을 때 미국의 지도자들과 대학 의 총장들이 너무나 기겁을 하고 대학 교육이 잘 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교육 과정을 완전히 바꾸 는 일이 일어났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재수생들, 나이 어린 학 생들이 이런 일을 이렇게 감행한 것은 사회에 문 제가 있지 않나 먼저 개탄하고, 그 점에 대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쩌다 이 나라가 이 지경에 빠져버렸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지도자 들의 반성과 고뇌의 움직임이 먼저 일어나야 되 리라고 봅니다.

그런 움직임이 국가적으로 먼저 일어남과 동시 에 이 문제가 왜 생기게 되었으며 책임은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방지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실무 적 대비책은 무엇인가가 논의되어져야지 사회적 분위기 전체는 그대로 가고 부정부패나 비리가 일상화되어 있어서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대비책만 강구된다고 되겠 습니까?

또 하루에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전부 시험을 치는 이런 제도 속에서 관리가 어떻게 제대로 될 것인지, 그런 점도 아울러 체계적으로 생각해 보 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런 내용을 알 고 사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처를 했다고 뒤에 죽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교육부의 불감증이다"라고 많이 나옵니다마는, 교육부는 나름대로 이런 사 실을 알고 부정행위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경찰 청, 정통부에도 요청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차, 큰일 났구나. 이것이 만약 잘못되면 수 능시험 자체가 완전히 망가질 텐데'하고 큰 걱 정거리로 삼아서 주요 이슈로 이 문제를 다루었 는지, 아니면 언론 보도에 그런 것이 나오고 하 니까 형식적으로 문건을 하나씩 보냈는지, 저는 어느 쪽인지 그것이 답답합니다.

부총리께서 이런 사실을 접하고 부총리 차원에 서 대책회의를 했는지, 아니면 실무자 차원에서 정리하고 말았는지, 그 점을 우선 하나 알고 싶 고요.

두 번째는 지금 광주교육청 산하에서만 이 문 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정말 거기에 그칠 것인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어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더 큰 문제로 비화될 것이 아닌지, 오늘 광주경 찰청에서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마 는, 이것이 거기에만 그치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때는 손을 쓸 수 없는 범위로 확대될 것 이 아니냐?

또 하나는 광주교육청의 수능시험 관리 상황이 나 태도가 다른 시·도교육청과 달랐는지,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방지했는 데 광주교육청에서는 다른 데와 달리 소홀히 했 기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 고요.

아울러 걱정되는 것은 지난 금요일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위원을 4년 몇 개월 하는 동안 교육부장관이 7명이나 바뀌어 서 백년대계가 이래도 되겠느냐 하는 안타까움을 호소했는데, 이런 문제가 하나 일어나면 장관 목 날림으로써 끝장내 버리는 풍조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책임자가 누구인지, 광주교육청 교육감인지, 아니면 실무 대책을 맡고 있는 사람 인지, 아니면 그 반의 감독자인지 이것을 확실하 게 알아서 제대로 처리해야지 그저 국민들 무마 시킨다 해서 일률적으로 어느 급을 하나 날려 버 리는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다시 한 번 수능과 관련해서 문제가 이렇게 크게 불거진 데 대해서 교육부 수장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권 위원님의 말씀에 모든 점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였습니다. 사전에 우려를 하고 실무적 혹은 기술적인 차원에서도 대응을 했습니 다마는, 엄청난 정책 토론을 하고 관계 전문가들 한테도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꽤 대응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불상사 가 야기되었습니다.

광주교육청만의 어떤 소홀이냐, 저희들은 그렇 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전체 과정에서 모든 교 육청, 경찰청, 유관기관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우 려를 표명했고 다 나름대로 대단한 노력을 하고 협조를 했다고 저희들은 그때그때 확인을 했습니 다. 그러나 상황 자체가 불거진 것은 광주교육청 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그냥 실무적인, 기술적인 차원에서 대응할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도 교육 본령의 차원에서, 물론 우리 국민 전부의 일종의사회 교육적인 차원도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학교의 수험생들이 교육적으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바르게 인지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정말 없도록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도적인 개혁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정책 토론을 해서 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權哲賢 委員 그런데 지금 부총리께서 확보하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광주교육청 산하 말고도이런 보고가 혹시 들어 온 것은 전혀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 두어군데서 개인적으로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적발되었다든가, 아직까지는 개인 차원으로 보여지는건이 한 두세 개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직적으로 가담자가 많은……

〇權哲賢 委員 그러니까 광주교육청만이 아니고 이게 여러 군데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 단하고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옳을 것 같고, 광 주경찰서 수사결과 보고 하나에만 의존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교육부에서 조금 더 긴장해서 이 사태를 확인하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옛날 우리 드라마에 '민나 도로부'라고 '전부 도둑놈'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되었던 적이 있습 니다. 요즘 개가 아침에 짖지 않는다고 해서 왜 안 짖느냐고 물어보니 우리 집 주인도 옆 집 사 람도 다 도둑놈인데 왜 짖겠느냐는 우스개 말도 있는데 이런 사회 풍조가 아이들한테까지 미친 것은 아닌지, 이번 기회에 사회적 지도자들이 이 런 문제를 가지고 대오각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 런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잘 알겠습니다.

○**지병문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권철현 위원님 발언이 끝나셨는데 저희가 오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 등을 상정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차피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문제여서 보고를 받고 양당에서 한 분씩 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의사일정상 빠듯하기 때문에 수사결과 발표도 보고, 교육부도 대책을 만들고 하면 저희들이 추후에 다시 날짜를 하루 잡아가지고 구체적인 토론을 하고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부총리께서 외국 사절을 만나야 되는 일정이 있으신 것 같아서 우선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상정된 뒤에 자리를 뜨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우선은 그것을 좀 받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권 위원님이 입시부정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우리 당 유기홍 위원께서 또 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받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우여 그러면 유기홍 위원님께서 간단히 말씀하시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 사실은 오늘 원래 일정에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문제를 지적하는 정도 차원에서 하겠는데 대단히 충격적이고도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근원을 따라 올라가면 지나치게 변별력 중심으로 점수 한두 점에 집착하고 목숨 을 거는 식으로 되어 있는 현재 입시제도가 낳은 불행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제가 간략하게 여기에서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예방이 가능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4일 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부정 가능성 제보가 있었고 11월 1일, 11월 7일, 11월 15일 광주교육청 홈페이지에 사실은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감독관에게 부정행위 가능성을 고지하고 철저 관리를 강력하게 지시했다고 했는데 실제 이 부분을 너무 안일하게 받아들이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간상으로 충분히 답변을 못 하시더라도 광주교육청에서 이제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정확하게 어떻게 대책을 강구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내부에서 과정이 좀더 추적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정행위 관련 보고에서도 아직은 조금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사실 지금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정도가 활용되었지만 통신기기들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서 과연 앞으로 어떠한 새로운 수법들이 나올지,

그리고 이번에 이게 정말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대책 강구가 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점 을 지적드리면서 이 문제가 덮어져서는 안 된다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과정이 밝혀지고 필요하다면 과정에서 책임을 물을 것은 또 물어야 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것이 예방 가능하지 않 았는가 하는 지적들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부 총리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 습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저희 교 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만반의 노력 을 했고 예방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로 불가항력적이었다는 말 씀을 드리지는 못 하지요. 그러나 사실상 저희들 은 최선을 다했고 미리 예방하기는 참 어려웠던 일이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규명하고 필 요한 경우에 조치를 하겠고, 앞으로 대책에 관해 서도 보다 면밀하고 설득력 있는 대책을 마련해 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오늘 11월 22일 오후 3시에 종 합수사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또 교육부로 서도 현재 명확한 대책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 으로 판단됩니다.

양당 간사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 해서는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별도의 토론과 대책 숙의 기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부총리께서는 중국 국무위원 및 교육 부장관 등과 11시에 중요한 양국 교육에 관한 협 정을 체결하기로 회의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 렇기 때문에 교육부총리께서 지금 자리를 떠야 한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허락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부의 일정에 대해서는 차관이 대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인적자원부장관 안병영** 예, 위원 님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 정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상정할 정부에서 제출한 4건의 법률안과 11월 15일자 김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 률안은 11월 16일자로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위원회에 법률안을 상정 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서 회부 후 15일이 경과되어야 하지만 회부된 법률 안은 2005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시급을 요하는 안건이어서 양 교섭단체 간사위원님들의 협의 결 과 오늘 상정하게 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점 여러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地方教育財政交付金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 출)
- 2. 地方敎育自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 3. 地方敎育讓與金法廢止法律案(정부 제출)
- 4. 地方教育讓與金管理特別會計法廢止法律案(정 부 제출)
- 5. 地方敎育財政交付金法中改正法律案(김영숙 의원 대표발의)(김영숙·공성진·김양수·안상 수 · 엄호성 · 임인배 · 김문수 · 서상기 · 이계 진 · 박혁규 · 이재오 · 정병국 · 배일도 · 허천 · 안명옥 · 김애실 · 이덕모 · 정종복 · 이재웅 · 주 성영 의원 발의)
- 6. 地方敎育自治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김영 숙 의원 대표발의)(김영숙·박순자·홍창선· 이군현 · 허천 · 서상기 · 이계진 · 안상수 · 엄호 성 · 진수희 · 안명옥 · 정병국 · 임인배 · 박진 · 이덕모 의원 발의)

(10시42분)

○위원장 황우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 의사 일정 제2항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 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양여금법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정 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양여관리특별회계법폐지법 률안, 의사일정 제5항 김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 6항 김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관 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權哲賢 委員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예, 권철현 위원님 의사진행발 언해 주시지요.

○權哲賢 委員 오늘 의사일정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가 제안한 안과 김영숙 의 원이 제안한 안과 달리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뒤늦게 제출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을 저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오늘 상임위원회로 올라올 텐데요, 의안과에서 이리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 래서 여기에는 제 안이 들어 있지 않지만 제 안 을 설명할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 법률 논의하 는 그룹에서도 그 문제를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우여 워낙 시급한 관계로 존경하는 권철현 위원님께서 별도의 법안을 준비하셨는데 미처 본 위원회에 회부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權哲賢 委員 의안과에 제출해서 지금 여러분들 책상 앞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 권철현 의원 대표발의한 것이 1부씩 놓여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우여 그러나 아직 회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실에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병문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법안으로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지는 않았기 때문에이것을 안건으로 올려 다룰 수는 없고 우리가 법안 토의하면서 권 위원님이 의견을 얘기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법안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權哲賢 委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지금 존경하는 지병문 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이것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 길이 없기 때문에 권철현 위원님은 토의과정에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식 교육부차관 나오셔서 정부 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19일 교육위원회에서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께서 우리 부의 2005년도 예산안 편성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 제출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표하신 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일로 교육위원회의 원활한 예산 심사에 지장을 초래한 점에 대하여는 거듭 사과의 말씀 을 드리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절차 상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교육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 안, 지방교육양여금법폐지법률안, 지방교육양여금 관리특별회계법폐지법률안 및 지방교육자치에관 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은 2005 년도부터 중학교에 대한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됨 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 재정 의 지원 구조를 재조정하고, 초·중등 교육의 내 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당해연도의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세입액 전액 및 당해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하였으며, 둘째 국가는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증감 등 불가 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인건비 소요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는 교부율을 보정하도록 하였고, 셋째 현행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던 봉급전입금을 폐지하되, 봉급전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시·도세에 반영하여 시·도세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교육양여금법폐지법률안 및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종전에 지방교육양여금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부금과는 별도로교육세 세입의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기위한 양여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었고,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은 지방교육양여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양여금은 지방교육애정교부금법에 의한 교부금의재원으로 추가함에 따라 지방교육양여금법 및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은 종전에는 중학교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시적으로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의무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시·도의 일반회계로부 터의 전입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함에 따라 의무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의 부담 주체를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4개 법률안이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위원장 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대표 발의하신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 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 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 법률안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법 제12조 중학 교 의무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교육기관인 공립중학교 교원 봉급부담금을 2004년 12월 31일, 즉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금년 내 지방교육 재정구조를 재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의무교육이 된 중학교 교원 봉급은 지방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둘째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중등교원 봉급 을 국가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 는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매년 부담해 오던 중등교원 봉급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 육환경 개선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보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교부금 결산서와 보통교부금의 배분 등 교부금 운용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 록 하여 교부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기능을 강화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의무교육인 중학교 교원 봉급 은 국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 수립 이후부터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 에관한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서 일관 되게 의무교육기관의 교원봉급을 포함한 경비는 줄곧 국가부담원칙을 지켜 왔습니다.

2001년 1월 2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당시 국가 재정상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의무 교육인 공립중학교 교원 봉급의 부담 주체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로 규정했던 특례조항도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 므로 당연히 국가가 의무교육 대상인 중등교원 봉급 부담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행의 봉급교부금, 증액교부금, 경상교부금을 교부금으로 통합해서 단일화하고 교부금의 법정 교부율을 현행 내국세 13%에서 19.71%로 상향조 정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19.71%의 산출근거 는 현행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경상교부금, 봉 급교부금. 증액교부금에 해당하는 교부율인 19.07% 에 공립중학교 봉급액에 해당하는 0.39%와 지방 교육재정확충금 0.25%를 합산한 것입니다.

일부 의무교육인 중등교원 봉급액을 국가가 부 담하는 대신에 비의무교육-고등학교입니다-공 립학교 교원 봉급액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대로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 봉급 전입금에 해 당하는 금액을 시·도세에 반영하여서 시·도세 전입금의 비율을 현행 3.6%에서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는 6.1%, 그 밖의 광역시 및 경기도는 4.4%로 인상하고 나머지 지역은 현행과 같이 3.6%로 해서 의무교육 대상인 중등교원의 봉급 액은 국가가 부담하고 비의무교육대상 교원의 봉 급액은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부 담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둘째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매년 1900여 억 원을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에 소 요되는 경비를 보전하도록 해서 교육환경 개선 속도가 보여 학생, 교원, 학부모는 물론 지역주민 들이 매우 환영하며 세금 부담의 보람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시 · 도의 일반회계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이 줄어드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경기 도에서는 매 회계연도의 공립중학교 교원 봉급 부담기준에 따른 금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 선에 소요되는 경비에 보조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2004년 기준으로—그러니까 서울시의 경우에 중등교원 봉급부담액이 3932억원입니다-약 1900 여 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년 열악한 교육환 경 개선에 투자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전체학교 1만 494개 중에서 체육장이나 교사의 기준 미달 비율 이 전국 평균 3~4%인데 반해서 체육장 기준면

적 미달학교의 비율이 서울시는 15%, 인천시 13%, 경기도 5%이고 교사의 기준면적 미달학교의 비율은 서울시 9%, 인천시 7%, 경기도 5%로 상대적으로 수도권 소재 학교가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열악한 교육환경시설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중학교만 해도 학생들의 체형이 커졌음에도 32년 전인 73년에 제정된 규격의 책상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 100억 원이 없어서 전체 학교의 53%가 예전의책상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예산 부족으로 교체 계획조차도 수립하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의 교육환경 개선 대상 물량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학생들의 건강과 정 서감, 생활지도와 직결된 화장실 개선에 1365억 원, 난방 개선에 1151억 원, 소방시설 개선에 1945억 원 등이 필요하고 조도 개선, 창호 교체, 교실바닥 보수, 외부환경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총 7882억 원임에도 이의 2.7%인 213억 원밖에 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교육환경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예산 확보의 문제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30년 전후 때의 교실 안의 설비를 교체해 주고 보다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은 학교의 교실입니다. 학생 개인에게 직접 혜택을 주는 것은 책·걸상, 사물함, 교실의 전등 조도, 칠판, 화장실, 급식시설 등이 우선인데 개선 여하에 따라학생들의 체형과 건강, 행복감 부여 차이는 지대합니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교육적 영향과 피해가 막 대하므로 이제는 더 늦추지 말고 교육환경에 집 중 투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는 교부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동안 지방재정교부금법 제8조 결산보고와 교부금의 조정을 규정한 교부금의 결산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사문화되어 교부금에 대한 결산사항이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밖에 놓여 있게 되고 교부금 결산과 그에 따른 환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며 교부금의 조정이 실행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서 국회의 예산결산 심의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교부금의 결산서를 매년 5월 30일까지 국회 교육위 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고 매년 3월 이내에 보통 교부금의 배분기준과 배분내역, 배분금액, 그밖에 보통교부금의 운용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현행법에는 경상교부금, 봉급교부금, 증액 교부금 등으로 용도가 구분되어 있어서 지방자치 단체의 재량의 여지가 크게 없었으나 이를 교부 금으로 통합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입니 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 국가는 학생들이 편안하고 아름다운 좋은 교육적 여건하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교육활동에 열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국가가 의무교육의 주체로서 책무를 다하고 지 방자치단체도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환 경을 만들어 주는 데 경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한 본 개정안에 관심을 가져주시 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제출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취지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정부 수립 이후 50년간 견지되어 온 의무교육경비국가부담원칙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제39조제1항의 단서를 삭제하고 국가는 의무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 치단체에 전가하기보다는 교육에 관한 기본 원칙 을 지키고 국가가 이를 직접 챙겨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우여 위원장, 지병문 간사와 사회교대) **이위원장대리 지병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충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 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충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

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2004년 11월 12일 정부로부터 제출 되어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 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변경에 대해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 봉급교부금, 경상교부금, 그리고 증액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재원을 통합하고 지방교육양여금을 이의 재원으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으로서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32에 해당하는 금액과 당해연도의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세입액 전액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해연도에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세입액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육양여금과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지방교육양여금의 재원을 교부금으로 통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개정안의 취지는 2005년도부터 중학교에 대한 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지원구조를 단순·투명하게 조정하고 초·중등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부금의 규모를 확충하려는 데 있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의 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교육양여금의 양여기준은 시·도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양여하도록 규정되고 있는바 이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양여금의 재원이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의 재원으로 통합 되어 운용됨으로써 보통교부금의 교부기준인 기 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교부하는 결과가 됩니다.

다만 이 개정안 부칙 단서에 따르면 지방교육양여금제도의 폐지 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의통합과 관련된 규정에 시행일이 이 개정안의 시행시기—2005년 1월 1일이 되겠습니다—보다도 1년이 늦은 2006년 1월 1일로 규정되고 있는바 지방교육양여금제도를 1년 동안 더 연장시켜야 될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 개정안 부칙 단서는 표2와 같이 "200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비율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특별교 부금, 그리고 증액교부금으로 구분되고 있는바 이 개정안에서는 증액교부금은 폐지하고 보통교부금 과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19.32%에 해당되는 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96에 해당하는 금액 대 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 액으로 변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 내국세 추정액을 기준으로 개정안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규모는 7873억 원에 이르고 있는바 비율상으로는 특별교부금이 절반수준으로 축소되었지만 전체 내국세 총액에서 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특별교부금의 규모는 2004년 대비 71%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2008년도에는 현재의 규모인 1조 원대를 다시 회복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재정 규모 차이를 감안할 때 그 규모를 축소했다고는 하나 특별교부금의 비율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을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특별교부금은 교부금의 교부 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하여 교부한다는 점에서 자 치단체의 재정운용의 자율성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개정안에 따를 때 전체 특별교부금의 규모는 축소되었지만 정책사업 수요의 경우 오히려 종전 보다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개정안에 서 규정한 정책사업 수요의 교부목적 및 지원대 상에 대해서 과다하게 설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에서 특별교부금 중 정책사업수요의 지출근거로 삼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2는 그 입법취지 및 법문의 해석상 전국에 영향을 주는 국가적인 시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로 인하여 다른 자치단체들과 비교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국가가 별도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현행 집행되는 정책사업 수요의 사업 중 개정 안의 요건에 맞는 사업은 극히 일부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규모 축소 및 그 집행결과에 대한 적절한 통제방 안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합리적인 교부금 집행을 고려해서 전향적으로 재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부금의 교부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 겠습니다.

보통교부금의 교부기준은 현행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검 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통교부금의 교부 시특정한 용도 또는 목적을 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총액으로 교부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각각의 지역교육 여건에 맞도록 예산 편성되어 집행되어야 할 것이나 전국적으로 일정수준이상의 재정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그 용도 또는 목적을 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통교부금의 교부와 관련해서 총액 교부원칙은 법률에 명시하여 동 재원의 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수정의견 을 제시했습니다.

특별교부금의 교부기준에 관련해서 지방교육재 정교부금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구체적 교부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법정화하고 재정인센 티브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특별교부금의 배분기 준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 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교부금의 규모 및 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개정안에서 신설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재정인센티브 제도는 특별교부금 중 재해대책 수요의 잔액이 예상되는 경우 그 재원으로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인센티브 제도를 신설한 취지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라는 개념이모호하기 때문에 재정인센티브 제도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사료됩니다. 따라서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

하는 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미 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교부금의 조정과 관련하여 자료의 착 오 또는 허위로 인한 부당한 교부금 교부 시 그 초과교부액을 다음 교부금 교부 시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현저하게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의 징수를 태만히 한 때에는 교부금의 감액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금의 경우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오 또는 부당교부 등에 대하여 보통교부금을 교부받은 지방교육자치단체로 하여금 적절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 시지역 중학교 의무교육이 단계적으로 확대·시행됨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당해 중학교 교원들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정률을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시와 경기도에 부담시켜 오던 것을 그 금액 만큼 시·도세 전입금에 반영하여 시·도세 전입 금 비율을 인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교직·시민단체들의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구체적인 서울특별시의 경우, 광역시의 경우, 교직·시민단체의 경우는 다음 법안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결론적으로 의무교육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비용부담 문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이라든지 일반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 간의 상관관계, 교원의 신분 설정 등을 고려하고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그 밖의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부율 보정, 제4조 신설에 관련된 부분이 되 겠습니다.

개정안 제4조에서는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증감 등 불필요한 사유로 인해서 지방교육재정의 인건 비 소요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는 교부금의 교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정안이 봉급교부금제도를 폐지하고 내 국세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교부금 재원 을 통합함에 따라 내국세의 변동 폭보다도 더 큰 인건비의 현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교육 재정의 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교부율 보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인건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나 타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부로부터 제출된 지 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 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한시적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경비의 부담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비부담사항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관련규정의 개정에 맞추어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던 의무교육 관련 경비부담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을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의무교육 등에 관련된 경비부담에 관한 규정의 개정경과를 보면 표1과 같이 2001년 개정 전에는 제39조에서 의무교육경비 등의 부담주체를 국가로 하고 있고 의무교육 외의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양분하고 있습니다.

2001년 12월 19일 개정 시에는 역시 의무교육 경비 등의 부담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단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교 육 외의 경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경우는 의무교육경비 등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둘로 구분하고 있으며 의무교육 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학부모 등이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당초 이 법에서 의무교육은 국가가, 의무교육 외의 교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부담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2001년의 경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였고, 또 2004년 12월 31일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정부는 국가의 재정여건 및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고려해서 당초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던 의무교육 관련경비 부담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그 틀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의무교육에 관련된 경비부담을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 경비부담 내용을 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재 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과 연계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봉급전입금의 형태로 교육비특별회계에 일정금액을 전출해 오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5개 광역시와 경기도는 각자 부담하고 있던시·도 전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도세의 일정률로 환산하여 부담하게 됨에 따라 향후 시·도세의 규모 확장 시 전출금 역시 같은 비율로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조금 전 지방재정교부금 법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 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교직·시민단체들의 이 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3조제2 항의 규정을 근거로 해서 현행 교원의 신분이 국 가공무원인 경우 비용부담주체 간의 불일치 문제 라든지 교육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서 그 권한과 비용부담 의무 간의 괴리문제를 제기하면서 개정 안의 내용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현행 시·도전입금 부담비율은 과거 부산의 경제력을 근거로 설정된 것으로서 현재 부산시의 상황에는 적합하지 아니 하며 서울특별시와 동일한 비율로 타 광역시에 비해서 높게 규정된 개정안의 부담비율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직·시민단체의 경우는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현행 봉급교부금제도를 유지하고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중학교 교원 봉급은 봉급교부금으로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 오고 있던 봉급전입금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함으로써 교육재정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교육과 관련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비용부담 문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 일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의 상관관계, 교원의 신분설정 등을 고려해서 관련단체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될 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 육양여금법폐지법률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특별회계로 관리·운영되던 지방 교육양여금제도를 2006년도부터 폐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그 재원인 국세 교육세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일부로 포함 하여 각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 습니다.

현행 지방교육양여금 재원은 국세와지방세의조 정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육세 세입 액 전액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는바 2004년 예산 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양여금의 규모는 4조 2386 억 원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과 같이 지방교육양여금제도를 폐지하고 그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시켜 배분하는 경우 기존의 양여금과 교부금의 배분방식 차이에 따른 재원배분 방식의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시·도별 인구 수 비례에 따라 획일적으로 배분되던 양여금의 재원이 각 지방교육자치단체 들의 실제적인 재정결함 규모를 반영하여 교부하 도록 되어 있는 보통교부금의 교부기준에 의하여 배분됨으로써 지방교육자치단체 간 실질적인 조 정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부칙 단서에 따르면 지방교육양여금제도의 폐지 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의 통합과 관련된 규정의 시행일이 개정안의 시행시기보다 1년이 늦은 2006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교육양여금제도를 1년 동안 연장시킬 특별한사유가 없기 때문에 이 개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 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폐지법률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교육양여금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영되던 지방교육양여금 특별회계를 2006 년부터 폐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 다.

역시 다만 안 부칙에 따르면 지방교육양여금제도의 폐지 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의 통합과 관련된 규정의 시행일이 이 개정안의 시행시기보다 1년이 늦기 때문에 지방교육양여금제도를 1년 동안 더 연장시킬 이유가 없다고 사료되므로 개정안 부칙 제1항 그리고 제2항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병문 간사, 황우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법안은 2004년 11월 15일 김영숙 의원으로 부터 대표발의되어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 부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봉급교부금, 경상교부금, 증액교부금 등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을 통합하고 지방교육 양여금을 이의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으로 당해연도 내국 세 총액의 100분의 19.71에 해당하는 금액과 당 해연도의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세입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안과의 차이는, 김영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은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100분의 19.71이고 정부안의 경우는 1만분의 1932, 19.32가 되겠습니다.

교부금의 통합과 관련하여 경직성 경비인 교원의 인건비를 현재와 같이 별도로 산정하는 봉급교부금의 형태가 아니라 매년 유동적인 내국세총액의 일정률에 포함하여 교부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의 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 역시 지방교육양여금 제도를 폐지하고 그 재원인 교육세 세입액 전액을 지방교육재 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시·도별 인구 수 비례에 따라 획일적으로 배분되던 양여금의 재원이 각 지방교육자치 단체들의 실질적인 재정결함 규모를 반영하여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보통교부금의 교부기준에 의하여 배분됨으로써 지방교육자치단체 간 실질적인 재정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비율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특별 교부금 그리고 증액교부금으로 구분되고 있는바, 이 개정안에서는 증액교부금은 폐지하고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내국세 총액의 19.71%인 교부액 총액의 100분의 96에 해당하는 금액 대 교부금 총액의 100분의 4에 해당되는 금

액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5년 내국세 추정액을 기준으로 개정안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규모는 8032억에 이르고 있는 바, 비율상으로는 특별교부금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되었지만 전체 내국세 총액에서 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특별교부금의 규모는 2004년도 대비 72%에 해당되는 상황이고 2008년도에는 현재의 규모인 1조 원대를 다시 회복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의 경우에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응하는 사업에 지출되기보다는 국가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의 수행이라든지 특별한 재정수요로 보기 어려운 연례적 계속사업의 수행이라든지 중앙정부 차원의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또는 시범사업 등의 수행에 교부·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특별교부금이 교부된 이후 그 집행 결과에 대하여 형식적인 결산만이 이루어져 있고 연간 약 4000억 원에 해당되는 특별교부금의 교부·집행에 대한 적절한 견제장치가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에서 특별교부금의 집행내역을 살펴볼 때 전국적인 국책사업의경우에도 사업별로 16개 시·도교육청 전체에 교부되는 총액이 100억~200억 수준인 상황이고 특별교부금이라는 재원의 특성상 정상적인 재정수요 예측으로 파악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대응하는 사업에 충당된다는 점에서 대규모 사업은 그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개정안에 따른 약 5000억 원의 정책사업 수요 규모는 과다한 규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규모 축소 및 그 집 행 결과에 대한 적절한 통제 방안에 대하여는 지 방교육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및 합리적인 교부금 집행을 고려하여 전향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 다고 사료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의 교부기준 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된 재원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부족분을 지원하는 재원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통교부금의 교부와 관련한 총액교부의 원칙은 법률에 명시하여 동 재원의 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 및 절차와 관련하여서 도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제3조제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교부금 사전 신청주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취지상 교부금의 재원이 지역적인 교육재정수요에 충당되도록 하기 위한 특별교부금 교부절차상의 원칙을 정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재정인센티브 제도의 신설 취지와 관련해서 지 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 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재정 인센티브 제도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저해 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우수한 지 방자치단체를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방법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교부금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미비는 역 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의신청 절차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통교부금 교부 시 그 교부금의 산정에 적용된 기준 재정수입액 및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 및 방법을 상세히 첨부하도록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교부금의 정당한 교부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로 삼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경기도의 일 반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되어 있던 봉급전입금 제도를 폐지하고 비의무교육기 관 교원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도세 총액 의 일정률로 환산하여 반영함으로써 시·도세 전 입금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표 7>은 지방자치단체의 봉급전입금 폐지 및 시·도세 전입금 비율 인상 내역이 되겠습니다.

현행 시·도 봉급전입금의 경우 서울은 100%, 부산은 50%, 광역시·경기도는 10%로 되어 있던 내용을 개정안에서는 시·도세 전입금의 비율을 서울·부산은 6.1%, 기타 광역시와 경기도는 4.4%, 기타 도는 3.6%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종전 시·도세 전입금 비율 인상 내역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비용부담 문제라든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검토사항으로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정부에서 제출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서 제출되었습니다.

정부안에 따른 200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세출예산은 19조 6821억 원인 반면 이 개정안에 따른 200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세출예산은 20조 794억 원이 되어서 양자는 3973억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의 심사는 2005년도 예산안의 심사와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 다.

교부율 보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김영숙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중학교 의무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경비의 부담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 담하도록 하였던 현행 제39조제1항 단서조항을 그 유효기간이 200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삭제하고 당초 이 법률이 규정하고 있던 바와 같이 의무교육에 관한 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 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부터 의무 교육기관인 시 지역 공립중학교 교원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 누가 부담할 것인가, 또는 어떻 게 분담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견이 제시된 점을 정부안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한시적으로 부담해 오던 시 지역 공립중학교 교원 봉급에 대한 봉급전입금을 2005년도부터 당해 지방자치단체 시·도세 총액의 일정률로 환산해서 시·도세 전입금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의무교육에 관한 경비 부담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김영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에 대해서는 분담 주체를 둘로 구분하지 아 니하고 국가로 하고 있는 점이 차이점이 되겠습 니다.

따라서 의무교육과 관련한 국가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 간의 비용부담 문제 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 일반 지방 자치와 지방교육자치 간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해 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김영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국회법 제42조제1항을 보면 "위 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입법 활동 등을 지원하 기 위하여 의원 아닌 전문 지식을 가진 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고 했습니다.

국회사무처법 제9조도 보면 "법률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각종 의안 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 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위원회에 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 자료 의 제공" 이렇게 전문위원의 직무에 대해 규정하 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위원 장과 위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각종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등을 통해 위원회 에서 각종 질의 시 소속 위원에 대해 질의 자료 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58조제1항은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것은 안건 심사를 위한 한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소속 위원의 의정 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안건을 심사하는 위원들의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부가 제출하고 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의 검토보고가 소속 위원의 입법 활동 지원을 제대로 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분명 법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 제8조의 결산서 보고 내용을 삭제하고 있으며,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 안에는 교부금 배분과 결산에 대한 내용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상반되는 내용이 있음 에도 오늘 배부된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이와 같 은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의무교육 대상 교원 봉급을 지자체에 부담시키려는 정부안에 대해 서울시와 부산시 등지방자치단체들과 교원 단체 등 교육계에서도 반대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고, 의무교육 대상 교원의 봉급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본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 서울시와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들과 교원 단체 등 교육계에서도 분명히찬성하고 있음에도 마치 정부안에 대한 것과 같이 반대나 이견이 있다는 식으로 애매모호하게기술하고 있습니다.

정부안과 소속 위원의 개정안에 대해서 교육계가 찬반의 분명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소속 위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분명한 찬반 의견을 전달하지 않는 것인지?

국회의원의 입법 권한을 포함한 의정 활동은 행정부를 감시·비판하고 견제하며 국민을 대표 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속 위원의 의정 활동을—입법 활동입니다—지원하기 위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소속 위원 간에 상반된 견해가 있을 경우에는 중립적이어야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전문위원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 칼날이 무뎌질수록 위원들의 입법 활동도 무뎌진다는 점을 인식해서 검토보고가 형식적으로 작성·보고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오늘 류충현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는데, 김영숙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 대한 국회의 입법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석전문위원 류충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의거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위원님의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으로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권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哲賢 委員** 부산 사상구 출신 한나라당의 권 철현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조율을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법안이 예산안을 강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안 심사를 먼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특이하게 예산안을 먼저 다룬다고 해서 법안을 늦게 제출했기 때문에 제 법안이 공식적으로 상정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의안과의 보고에 의하면 11월 24일 보고되고 상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정되는 것을 전제로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제가 미리법적 절차를 다 밟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과 김영숙 의원 안을 보고한 연후에 저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1차로 토론 순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지병문 간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제 입장은 교원의 인건비 부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부산시의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를 조정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로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엊그저께 서울시의회에서 이 부담이 헌법 위반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오늘 중에 소송을 내기 로 결의했고, 경기도의회에서도 거부하기로 엊그 저께 결의를 했습니다. 또 부산시에서도 부산신 문에 "부산시 재정 부담 가중 반발"이라고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집중적인 합동 반발을 맞게 되어서 국회의 위상이 잘못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지자체도 무마하고 교육의 효과도 가지는 방향으로 상임위원회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1971년부터 33년간 부산시는이 부담금을 부담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가 있었고 나머지 광역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 산시가 70년대 초만 하더라도 사정이 괜찮아서 부산시가 이것을 부담하기로 했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100대 기업 중 25개의 본사가 부산에 있 었습니다. 지금은 단 1개도 없습니다. 부산 재정 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 여러분이 상상하기 어려 울 정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서울시와 부산시가 같은 부담금을 안는 것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저 희들이 경악을 금치 못해서 교육부에도 누차 의 전을 전달했습니다마는, 정부 측 안을 국무회의에서 결의할 때 교육부가 나서서 이 법안이 잘못됐다고 하기가 어렵다면 정부 측 안을 마련하는 국무회의에서는 통과시키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이 내용을 바꾸면 되니까 그렇게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어서 이 시간까지 기다려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의 경제적 어려움이야 말할 것 도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부담해 온 것이 5개 광역시의 인건비 부담 총액보다 473억 이나 더 많은 규모였고, 부산보다 예산이 3배나 많고 교원 수도 엄청나게 많은 경기도는 부산시 가 부담하는 것의 69%밖에 부담하고 있지 않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정부안도 서울과 부산은 10%, 경기도는 5% 로 해서 부산이 경기도보다 5%, 배나 더 부담하 도록 하고 있는 것들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존경하는 김영숙 의원 안은 서울·부산 6.1%, 경기도 4.4%입니다마는, 김영숙 의원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울·부산을 같이 하는 것은 좀 무리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조정하기로는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지역별 재정력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과 예상되는 부담이 얼 마나 되느냐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 서울시의 재정력 지수는 127.1%입니다. 경기도는 112.1%, 인천은 110.5%, 부산은 92.6%입니다.

서울·경기·인천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부산의 재정력 지수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데 도 왜 서울과 같이 하라는 통계가 나왔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산보다 사정이 좋은 경기도·인천 등과 같은 선에서는 저희들도 부담하겠다, 그러니 그 선으로 조정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전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영숙 의원이 낸 안을 보면 기존 공립중학교 교원 봉급 부담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줄어드니까 부담액의 50% 이상을 해당 교육환경 개선비용으로 쓰면 지역 출신 의원들도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지역의 학교 환경 개선에 쓸 수도 있어서 학교 전체 환경이 개선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여기에 써 버리면 지방자치단체에는 별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

다.

지금 지방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 열악함이 엄청나게 심각한 점을 고려해서 저는 50% 이상을 10% 이상으로 조정했으면 합니다마는, 10%가 타당한지 50%가 타당한지는 나중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논해서 적정선을 찾든지 해서 합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의무교육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여의치 않기 때문에 시·도세로 부분적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일정한시간이 지나면 국가가 부담한다는 약속을 전제로지방자치단체들이 무리하게 해 왔었는데 국가가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물어라 하는 꼴이 되어 버렸는데, 이 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도 줄여주면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차관께서 본 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저희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관련해서 사실은 작년부터 관계 기관, 시·도와 죽 협의를 했습니다. 가능하면저희들이 합의를 해서 제출하기 위해서 해 왔는데 결국 그것이 합의되지 않고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제가 직접 부산시를 방문해서 시장도 만나고 의회 의장도 만나서 이 문제를 협의했습니다마 는, 부산시의 주장은 70년대에 출범할 때 시세의 재정 상황과 지금은 현저하게 다르다…… 저희들 이 각종 지표를 보고받아 보면 부산시의 설명은 타당성이 있다고 일단 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조정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 법안 자체가 국회에 제출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일단 현행대로 하고 국 회에서 많은 논의 과정에서 조정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〇權哲賢 委員 지난 금요일 상임위원회에서 이 것의 부당함과 무리함을 정부 측도 교육부 측도 인정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대안의 제출 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아직 대안을 마련해 제출 할 단계가 아닌지 아니면 교육위원회 자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권철현 위원님, 여야 위원님께서 협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별도의 팀에서 이 법안과 관련해서 논의 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에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정부 측 대안을 제출해 보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 간에 먼저 상의를 해서 책정한 분담비가 어떻게 될는지 하는 부분은 위원님 쪽 요구 사항에 따라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權哲賢 委員 아무쪼록 지역이기주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낮추고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합리 적으로 설명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동료 위원들께 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잘 참작해서 잘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존경하는 정봉주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위원** 노원갑 출신 열린우리당의 정봉 주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비율을 정산하는 방법에 문제가 좀 있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총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고요.

이번에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지방교육재정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제12조의 특례 조항이 사라지고 제3조제2항 이 부활하니까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지방에서 4000억 빠지는 부분, 3조 8000억 늘어나는 부분 해 가지고 총액 3조 4000억 정도가 늘게 됐다고 요. 그렇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 전체 지출 한도 선에서······

○**정봉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 재정에 대해서······

교육 재정이 그렇게 느는데 기획예산처 논리는 국가 재정 여건상 어쩔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논의의 초점이 뭐냐 하면 물론 우리의 교육 여건과 국가 전체 재정이 열악하지만 결국 교육 재정의 확보가 절실한데, 제가 지난번에 예산 심사할 때도 질의했지만 기획예산처 논리에 밀려서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비율을 거꾸로 조정해 내는 궁색한 예산 편성, 궁색한 법 개정이라는 느낌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한 3조 4000 억 정도가 느는데, 법 개정을 하면 2005년도 기 준으로 1600억 정도가 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12월 31일을 기점으로 특례 조항이 사라지고 원칙적으로 제3조제2항이 부활하면서 3조 원 이상의 교육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 논리에 근거해서, 국가 재정상 어쩔 수없다는 논리에 밀려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기획예산처 주장에 일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저도 아닙니다. 부득이하게 갈 수밖에 없는 측면은 있는데, 어쨌든 개정하는 것에 따라도 내년도 예산이 일정 정도 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안과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아야 되겠다, 그리고 방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해법을 찾아 나가야 될 것이냐? 우리가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 교육부에서 낼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2004년도 교부금 전체 비율을 19.23%로 계산하셨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내년도 예산······ ○정봉주 위원 올해요. 교부금 전체 비율은 내 국세 대비 19.23%, 그러니까 올해 19.23% 맞지 요? 그리고 내년도 인상조정안이 19.32%가 된다 는 말이에요. 교육부 조정안이라고요. 법 개정에 따른 조정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9.23%에서 19.32%로 가니까 0.9% 늘어난······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19.23%이라고 하는 것이……

○정봉주 위원 그러니까 내국세 13%인 기존 경상교부금하고 비교하는 논리가 있는데 종국적으로는 올해 내국세 대비 지방교육재정이 19.23%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19.23%에서 19.32%로 갔다는 표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2004년도 기준으로 하면 19.23%인데 새로운 제도에 따라서 환산기준을 2005년도 기준으로 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 19.32%라는 뜻이지요. 다시 말해서 똑같은 기준치 가지고 19.23%에서 19.32%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봉주 위원 그렇지요. 내국세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산편성에서 원래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 2005년도에 19.07%로 간다는 것이 교육부 주장입니다. 그렇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예.

○**정봉주 위원** 그러니까 19.07%에다가 0.25%를 합산하니까 19.32%가 나오는 것이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예.

○정봉주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뭐냐 하면 경상·봉급·중액을 다 합하게 되면 19.07%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올해 봉급교부금 부족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급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2563억이에요. 그래서 2563억을 더하니까 19.32%가 나와요.

(황우여 위원장, 지병문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니까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순증하는 부분이 생긴 것이 아니라, 비율 늘어나는 것이 19.07% 비율에다가 봉급부족액 0.25%를 더한 것이라고요. 실질적으로 내년 예산은 증액효과가 별로 없어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2500억 정도입니다.

○정봉주 위원 그러니까 모두에서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3조 4000억 정도 늘 수 있는 부분이 기획예산처 논리에 밀려서 불가피하게 역으로 현 실에 따라 먼저 예산책정을 해 놓고 이것에 따라 서 법 개정 등등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2500억 정도밖에 안 된다, 여기에서 기획예산처 논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종국적으로 무슨 현상 때문에 자꾸만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실질적으로 총액 늘어난 것에 비해서 인건비 증액부분이 상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교부금 부분을 자꾸만 치고 내려오거든요. 지방에서 몇 % 해 달라고 하는 등등의 문제도 종국적으로 교원은 확충해야 되고 연 인상분 있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경상교부금을 치고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가뜩이나 열악한 학교 교육현장이나 시설확보, 교육환경 조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육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주장과 기획예산처의 정부재정상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부딪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위원님, 발언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경험치상

지금까지 예산증가율……

○정봉주 위원 잠깐만요, 말씀하시기 전에 예산을 먼저 잡아놓고 비율을 역순한 것입니까, 아니면 순증하는 부분에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국세가 증가한 비율을 죽 분석하고 인건비가 증가한 것을 분석해 오면 내 국세가 평균해서 8%, 9%가 증가되었고 인건비는 한 7%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 구조로 가면 결국은 인건비 증가율보다는 내국세 증가율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저희들은 한 5년 동안 1조 5000억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만약에 인건비가……

○정봉주 위원 그런데 지난번 예산 관련 질의할때 내국세 이야기하면서 8.2 몇 %가 되면 인건비증액 부분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지난 97년부터 2004년까지 내국세 연도별 추이를보게 되면 들쭉날쭉이에요. 예를 들어서 98년도에는 마이너스 2.17%이고 2000년도에는 27.6%가늘어납니다.

내국세 증가 비율을 교육부에서 8.8~9% 정도 잡은 것처럼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내국세 증가율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수치상으로 잘못되어 있는데 제 질의의 초점은 일단 내국세도 증가하는 부분이 잘못되어 있고 또 추정대로 가지 않았을 경우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추정대로 가면서 그것에 근거해서 법 개정하는 것이 하자가 없으면 제가 이런질의하지 않지요. 문제는 전체 총액 늘어난 것에비해서 인건비 증액이 늘어나면……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그래서 위원님 아 시겠습니다마는 교부율 보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처와 집요하게 협의를 했 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부담 때문에 다른 예산이 잠 식되는 경우에 특별한 협의를 해서 예산을 더 받 아올 수 있도록, 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 거를 둔 것입니다.

○정봉주 위원 교부율 보정에서도 인건비 부분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고 비의무교육기관 빠지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요? 지난번에 제가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인건비가 불안정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예산

이 전체적으로 순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법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내년도 예산 증가되는 부분에 문제가 없기 때문 에 저는 이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일정하 게 검토하면서 넘어가되 내년 1월부터 교육위원 회 산하로 지방교육재정소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여야 위원들, 교육부, 기획예산처 해 가지고 지방 교육재정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불안 해 하는 부분들, 일선 교육현장에서 불안해 하는 부분들을 갖고 기획예산처하고 싸울 것은 싸워야 지요.

제가 제안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소위원회를 교육위원회 산하로 구성할 테니 교육부에서 이부분에 대해서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일선 현장에서 불안해 하는 것, 지자체에서 불안해 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문제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저에게 30초만 발 언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서……

○**정봉주 위원** 기획예산처 논리에 밀리지 말라 는 이야기예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전체 규모에 비해서 저희들의 예산 규모가 늘어나는 것에 반대할이유는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정부예산 전체 규모 자체가 매년 보면 5%, 7% 증가가 되는데 지방재정 규모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교육예산 전체 규모 중에 어떤 부분인가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야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기 때문에 대학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서 적어도 지방재정의 규모가 늘어나려면 교육부 입장에서는 대학교육의 재정도 똑같이 늘어나지 않으면.....

○**정봉주 위원** 교육예산 총액을 늘리는 방향으로 기획예산처하고 얘기를 해야지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정리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육예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교육부가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를테면 얼마 전에 복지부장관이정부 뜻에 약간 거스른 점이 있지만 연기금 사용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국민들 80% 이상이 지지해요.

교육부도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교육 문

제 현실에 대해서 이 부분이 반드시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다면 기획예산처 논리에 끌려가지 말아 야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존경하는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 규모를 늘리는 것에 절대 인색하 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대학재정이나 직업교육이나 다른 분야에도 소요가 많기 때문에 같이 늘어가야 의 미가 있는 것이지 한쪽만 늘어나면 다른 부분에 서 축소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 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봉주 위원** 어쨌든 소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그것은 위원님들 께서 논의를 해 주시면……

○위원장대리 지병문 정 위원님, 그것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논의할 문제이지 차관님께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까요.

○정봉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지병문** 정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

○**이군현 위원** 이군현입니다.

일이 꼬여서 상당히 복잡하게 생각이 되는데 요.

우선 우리가 오늘 오후부터 예산심의를 하려고 하지만 이 문제가 결정되지 않으면 오후 예산심 의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어려운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금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류충현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셨듯이, 24 페이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의 경우에 주장하는 것, 또 부산광역시에서 주장하는 것, 또 교직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2005년 12월 말까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연기해서 내년 1년 동안에 충분히 관련 단체나 기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결정하든지 아니면 지금 정부 안하고 김영숙의원님께서 낸 안을 먼저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만나서 조율이 되고 의논이 되는 절차를 밟아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지 않고 지금 정부 안대로 하면 한 1조

6000억 원 예산이 더 소요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김영숙 의원 안으로 하면 정부 안과 4000억 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부 안과 김정숙 의원 안을 가지고 조율하는 과정을 교육위 여야 대표 위원들께서 모여서 의논을 좀 해야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지 않고 이것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에는 굉장히 무의미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가 된다음에 모든 것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우선 여야 위원들 간에 소위 구성을 하든지 해 가지고 정부 안하고 김영숙 의원님이 낸 안하고 조율 작업을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제가 입장을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 까?

○이군현 위원 예.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크게 보면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한쪽은 전체 예산규모를 늘려야 된다는 주장이 하나 있고요. 규모에 관한 문제이고, 두 번째는 지자체가부담을 못 하겠다는 두 가지 쟁점입니다. 그런데이 부분이 연기되었다고 해서 이 문제가 결국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연기되는 경우 예산규모를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계속 주장하면 더 늘릴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또 하나는 지자체가이제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쪽으로 의견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 문제를 지자체하고 계속 논의해 왔는데 결국 합의되지 못한 상태로 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셔서 이번 말까지 통과를 시켜 주었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 발단이 된 것이 제가 조금 보충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대리 지병문 그 문제는 이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다 포함해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 김영숙 의원께서 제출한 법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때 교육부 의견도 그때 제시하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그것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군현 위원님 질의 끝나신 것입니까?

○이군현 위원 예.

○위원장대리 지병문 이어서 존경하는 복기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왕 위원** 복기왕입니다.

저도 앞서 질의하신 존경하는 이군현 위원님 생각처럼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 서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앞서 상임위에서도 그런 유감 의 뜻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예산을 국회에서 다루어야 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러저러한 절차상의 문제로 해서 혹여나 미루어지게 되었을 경우 지금 가뜩이나 17대 국회에 보내는 국민들의 눈초리가 애초에 컸던 기대에 비해서 변화됨이 없는 구태의연한 모습 그대로를 답보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고, 저는 그래서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의식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내년도 예산안만큼은 다른 상임위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교육위에서는 예정된 절차대로 원만하게 해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애초에 황우여 위원장님께서도 문제제기를 공식적으로 하시고 유감 표명을 공식적으로 하셨고 그에 대한 교육부총리의사과, 그리고 차관의 사과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총체적인 문제를 현실로 받아들이자, 그래야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을 스스로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어찌 보면 삼권분립에 대한 중 대한 침해이고 도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 다.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은 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삼권 분립 국가에서 용납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 관계자 분들도 마찬 가지로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예, 그렇습니다.

○복기왕 위원 그리고 먼저 제기를 하지 못한 교육부에 문제도 있지만 우리 국회도 17대 원 구성이 좀 미루어지고, 특히 우리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도 아직 소위원회도 제대로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내부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교육부 만을 무조건 잘못했다고 탓하기에는 우리 스스로 도 약간의 흠이 있기 때문에 다소 반성을 합니 다.

저도 기본적으로 교육부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찬 성합니다. 어느 분야의 예산보다 더 늘어나고 확 대되어야 될 부분이 교육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숙 의원님께서도 법안 제안 설명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 낙후되어 있고 70년대 의자가 몸집이 커진 지금 아이들에 게도 여전히 쓰여 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 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가 예산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효 율적으로 우리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면서 내년도 교육예산을 짤 것인가 지혜를 같이 모아야 된다 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당장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하나로 서울 시에서도 개정안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고 나 섰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권철현 위원님 께서도 부산시에서도 문제를 삼겠다고 하는데 이 런 법적 대응에 대한 대응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법적인 검토와 자문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산시와 서울시가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 안에서도 수차례 그 문제를 논의했고 검토했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반대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들이 교육에 대해서 어떤 권한도 가지지 않으면서 왜 교원의 봉급만 지불하느냐 그것이 핵심이고요.

○**복기왕 위원** 아니, 차관님. 그들의 주장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우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지자체가 일반 교원의 봉급을 부 담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 이냐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기왕 위원** 현재 자문 단계라는 말이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예.

○복기왕 위원 이 문제도 저는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화되는 시점 이 얼마 안 남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바로 현 실화될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서 어떤 대 응방안을 갖고 있는지 향후에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 다.

지난 1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만한 협의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지방자치가 자리 잡아 나가는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 간의 역할분담이 아직제대로 자리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혜롭게 풀어야향후에 선례를 제대로 남길 수 있고 이런 과정하나하나가 국가와 지방 간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만들어 나가는 시금석이 된다고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시와 부산의 경우에 동등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지적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모두가 동의를 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저희들의 기본전 제는 이것입니다. 어쨌든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규모 범위 내에서 일단 시·도 간의 분담비율이 정해져야 되겠다는 기본원칙하에 만약에 부산시가 부담비율을 낮춘다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시·도에 크게 부담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대적으로 부담해 주면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복기왕 위원 저희 교육위원들도 지혜를 모아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지만 좀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교육부에서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의해서 부산시에 과중하게 부담이 되는 부분을어떻게 다른 자치단체에서 나눠서 질 수 있는지하는 방안을 저희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다면 오늘 오후에라도 제안을 해 주시면 그것을저희 법안 팀에서 논의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삼을 테니까요. 내일 10시부터 회의가 진행되니까오늘 저녁때라도 검토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방식 말고 새로운 방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퍼센티지까지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그렇게 하겠습니

다.

○복기왕 위원 그 나머지 각론으로 들어가서는 우선 법안 문제부터 먼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병문** 복기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최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위원** 최순영입니다.

법이 사실 한번 개정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말 공교롭게도 급격히 법안이 제출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사실 이런 법을 개정하려면 우리가 토론을 여러번 거쳐서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법안을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유감스럽게도 이번에 이것을 또 개정을 해야만 예산이 세워지기 때문에 근본 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교육재 정은 늘어나야 되는 것이 근본의 문제라고 생각 을 합니다.

사실 이번에 정부 개정안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2007년도까지 교육재정을 GDP 6%까지 확대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 현재 보면 GDP의 4.28%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교육재정을 보면 4.19% 오히려 감축을 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요.

교육재정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들이 다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번 대선 때도 보면 여야 후보들이 다그렇게 해야 된다고 정책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재정을 GDP의 한 5% 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문제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나부산시에서 교부금법을 놓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좀 근본적으로 특별교부금을 축소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 것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권한을 주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특별교부금을 축소해 줘야만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도 의회가 있고

교육위원회가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도 두 번씩이나 이것을 다루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서 그쪽 권한을 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 생각입 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아예 폐지를 하면 더 좋겠지만 폐지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경상교부금의 1% 수준으로 대폭 낮추어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저희들도 특별교부금 예산을 좀 줄여서 시·도에 넘겨주는 원칙에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자치부 같은 경우하고 저희하고 재정에 대한 기본체제가 거의 유사합니다. 행정자치부도 100분의 4 정도로 대폭 축소를 해서 저희들도 그런 비율에 맞춰서 시·도에 대폭 넘겨주고, 또 중앙 수준에서 보면 국가정책적인 사업을 꼭 해야 될 상황이 생기고,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재해문제가생기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감안해서 기본적으로시·도에 넘겨주되 최소한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100분의 4 정도로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재해 같은 것은 예비비로도 사용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그 예산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 예비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러면 아예 이번 기회에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우리가 법을 개정할 수도 있겠네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예, 이 내용에도 그런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리고 교육재정을 GDP 5% 수 준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재정이 늘어나야 된다,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초·중등, 대학, 직업, 평생학습여러 분야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당위성을 인정합니다마는 국가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려워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그것이 현실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려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중학교가 의무교육이 되었으니까 그만큼 근본적 으로 교육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 까?

그런데 그 예산은 그대로 두면서 자꾸 의무교육을 하면 결국 이 부분은 어디에서도 누수가 되는데 근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교육예산이 올라가지 않으면 이런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 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는 근본적으로 남는 것이고 눈 가리고 아웅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교부금법을 개정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확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특별교부금을 축소하고 지자체 봉급전입금을 폐지하는 대신 정부안처럼시·도세 비율을 조정하면서 교육재정을 GDP의 5% 수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잠정적으로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지병문** 최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2000년 도에 통과되기까지 교육부에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저도 교육 청의 교육장으로 현장에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 의뢰해 왔는데 해당 청의 교육위원이 이해가 좀 안 가니까 당위성을 설명해 달라는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만나고당위성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해서 그 법이 통과되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기관장들이 구청이나 이런 지방자치단체에 막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보도블록 이런 것이나 좀 해 주지 해 줄 길이 없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교육기관의 교육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그동안에는 서울시장의 심의를 거쳐서 도와줄 수 있었기 때문에 올리지도 않고 심의 받기를 꺼렸습니다.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통과함에 따라서 서울시장이나 도지사의 심의를 받지 않고 단위 지방자치단체 기관장이나 구청장 선에서 결정해서 도와주는, 그법으로 인해서 200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 법

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구청이나 단위 지방자치 단체에서 도와줄 수 있나 보다 해서 찾아가 보면 돈이 없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이유로 보도블 록이나 울타리 개선하는 정도에 그치고…… 그래 도 강남구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있으니까 학교 에 따라서 1000만 원도 지원 받고 많은 데는 그 이상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1000만 원만 해도 교육환경 개선이 굉장히 빠르게 되기 때문에 기관장으로서는 상당히 즐거워하고 학부 모들도 참 좋아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12월 말로 한시적으로 이 법이 끝나게되는데 정부가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을…… 현장에 가까이 가서 교실 안을 들여다보세요. 그러면파악할 수 있고 각종 건의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중등교원 봉급 부담을 지금 그대로 한다면 교육환경 개선이 요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점차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요.

정부밖에 더 기다립니까?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안 주면 가서 과감하게 부딪쳐서 당위성을 설명해야지요. 제가 서울시의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는 뽑았어요. 전국의 것을 뽑아 보십시오. 아까제가 제안설명 때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혜택이 계속 가려면, 정말 좋은 기회니까 법률안을 다시 내야지…… 그 법률안을 낸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나 교원들이 교육환경에 대해서 열악하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학교 건물과 교실내외의 시설, 설비 아닙니까? 그리고 학생들이학교에 와서 혜택을 받는 것은 책걸상에 자기 소지품 넣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2년 된, 이것은서울시교육청의 통계예요. 지금은 애들이 10년전과 비교해서 건강이 좋아져서 의자에 앉으면허리가 꼬부라질 정도인데 2인 1조니까 무조건그 책상에 맞춰서 앉아야 됩니다.

이제는 아이들의 체형이 커졌으니까 개인별 책상으로, 제가 기관장으로 있을 때 개인별 책상을 주장해서 그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아이들 체형에 맞는 쾌적한 환경, 기본적으로 화장실 이런 것은 해 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꼭 잘 검토하 셔 가지고, 차관님께서 아까 여야가 잘 협의하면 조정해서 법률안을 다시 내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아까 차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메모 를 해 놓았어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어차피 논의하실 거니까 많은 논의를 해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제가 여기에 적었어요. 차관님께서 "여야 의원 협의해서 요구사항에 의해서 법률 안을 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예.

○**김영숙 위원** 협의는 잘 할 테니까 그것에 대한 요구안을 잘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0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현행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르지 않고 정부가 제출한 개정법률안에 따라 작성 제출했는데 이는 정부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으로 생각한 것인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기대하는 것이지 요.

○김영숙 위원 막 급하다 하시면서 냈잖아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자꾸 말이 길어집 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문제를 고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부터 계속 했지만 그 자체가 합의 가 되지 않고……

○김영숙 위원 어디와 합의가 안 되었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교부금법을 개정 하려면 기본적으로 행정자치부와, 그다음에 부담 하는……

○**김영숙 위원** 거기야 반대를 하지요. 봉급을 다시 개선하는 거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것을 다 합의해서 법률을 먼저만들어 놓고 국회에서 통과되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순서이지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아니라……

○김영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 지자체와 협의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충이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전국의 교육환경이 열악한 것도 좀 파악을 하시고 봉급은 국가가 의무교육기관이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대야지요. 법으로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을 존중하시고 이제 한시적으로 됐으면 그 돈을 환경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서울시나 전국 지

자체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획예산처와 협의할 것은 그쪽에서 예산 관계를 벌여야지요. 거기에다 설명을 하셔야지요. 서울시 이런 데와 자꾸 이야기하면 뭐 합니까? 의견이 팽배하지요. 그래서 위헌이다, 지금 전국이다 들고 나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보면 차이 가 있습니다.

지방재정교부금 예산이 약 20조 794억 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19조 6820억 원보다 약 3974억 원 정도가 증액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증액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한시적으로 2004년 말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오던 중등교원 봉급액 3932억 원을 국가가 부담한다면 중등교원 봉급액을 부담하던 지자체에서 기존 부담하던 금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1866억 원, 약 1900억 원을 학교시설환경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예산에 보전되고……

정부안대로 지자체가 계속해서 중등교원 봉급액을 부담한다면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매년 1800억 정도를 별도로 책정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지자체가 봉급을 부담한다면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1800억 원 정도를 할 수 있겠느냐고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그것은 예산처와 구체적인 협의를 해 봐야 되지요.

그런데 현재를 보면……

○김영숙 위원 1800억 원도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해 보겠다는 의지가 계시면 봉급을 국가가 부담하고 지자체에서 하면 국민들도 좋아해요. 왜 냐하면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가 뽑은 구청장이 우리 지역 안에 있는 학교를 자꾸 달라지게하는구나 하는 홍보가 됩니다. "이것은 구청에서지원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 준 것입니다"이렇게 다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는 환경이 대폭적으로 나아져 야 됩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학교 현장의 교육 여건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저희 교육부가 당연히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하는 방

법의 문제 가지고 같이 고민하는 것이거든요. 이 미 예산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 규모를 늘리는 것은 국회에서 심의할 때 국회에서 검토하는 권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제가 발의한 법률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교육 환경 개 선되어야 됩니다.

가 보십시오. 자꾸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야말로 기자들이 왔는데 취재감이었어요. 책상을 보면 총알받이가 있는 것 마냥, 그리고 칼자국에…… 이런 데 그냥 앉아 있어요. 한심합니다.

그러한 상황을 좀 들여다보시고, 차관님께서도 어느 학교든 계속 가 보세요. 보시면 아마 그야 말로 당장 눈물이 날 정도로 '이런 데에서 아이 들이 배우고 있나'라는 생각이 나거든요.

이제는 기회가 좋습니다. 한시적으로 12월 말이면 끝나니까 봉급은 국가 의무교육으로 법대로하고 교육 환경 개선에 적극 투입되도록 통과가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지병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구논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 오.

○구논회 위원 앞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서 문제점이나 현안들을 많이 말씀하셨고, 또 존경하는 김영숙 의원님, 권철현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별도로 내셨습니다.

한편으로 교육·시민 단체에서는 20만 명 이상이 서명에 참가해서 정부안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고, 또 각 시·도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여러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와서 각종의 법안들을 저희가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지요. 교육부도 이것을 알고……

사실은 그 법안을 2004년 상반기쯤에 만들었다고 저희는 아는데 왜 하필 정기국회가 다 진행되고 거의 끝나갈 즈음에 제출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그것은 정말로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우리가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될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책임도 있고 문제점

도 있지만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저런 얘기들을 각설하고 이 논란을 좀 매듭 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께, 또 교육부에 한두 가지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김영숙 의원님이나 권철현 의원님께서 양보하신다면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법안을 통과시키되, 정부가 제출한 여러 가지 법안의 문제점과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방안, 또 교부금법뿐만 아니라 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들까지 포함해서 여야가 별도의 소위를 구성해서 2005년 상반기 안에 새로운 수정안을 만드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올해는 통과시켜야 하지않나 하는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지요.

(지병문 간사, 황우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것을 흩뜨리면 교육 재정뿐만 아니라 정부 예산 전체를 다시 원점에서 흩뜨려 놓고 시작해 야 될 텐데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 책 임은 교육부한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저는 그런 제안을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데요.

○權哲賢 委員 서울 100% 내고 부산 50% 내던 것을 서울, 부산이 같이 100%를 내라고 하면 부 산이 동의하겠습니까?

○구논회 위원 잠깐만요, 이번에 정부 안 그대로 하고, 나타나는 모든 문제점들을 2005년 상반기에 우리가 협의하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새로운 안을 만들자는 것이지요.

〇權哲賢 委員 지금 내는 것보다 더 낮게 내려고 하는데 더 올려서 1년간 내라고 하면 내겠어요?

○**구논회 위원** 그러니까 여러 얘기가 있잖아요. 부산은 그렇다 치고 또 일부에서는 경기도는 더 해야 된다는 논리들을 얘기하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소위를 하나 구성하고 현재 제출되어 있는 개정안은 정부안대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음은 존경하는 이주호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이주호 위원 방금 존경하는 구논회 위원께서 이 안을 받아들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이 안을 검토해 보면 지금 정부에서 도저히 국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그

냥 던진 거예요. 그만큼 무책임하고 무능하다는 탓을 제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차관께서도 인정하셨지만 이 안은 도저히 지자체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고, 교육계에 서도 엄청난 반대가 있는 안인데 충분히 심사숙 고하지 않으시고 교육부에서 던진 거예요.

타이밍도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 시점에 맞춰서, 예산안은 또 이 안에 근거해서 편성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국회에 프레셔를 주면서 책임을 국회에 전가시키는데요,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그리고 정부의 무능도 우리가 질타하지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야가같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정부안이 도저히 통과될 수 없는 안이라고 왜 생각하느냐 하면,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앙 정부의 책임과 권한의 괴리가 크다는 것이지요. 지방 정부가 실제 교육에 있어서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는데 요구하는 부담은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 정부들로서도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지금 정부 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서울, 부산, 경기 할 것 없이 지자체들이 지금 다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 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 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앞에서 권철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자체 간의 형평성도…… 지금 무슨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어떤 데는 6.1%, 어떤데는 4.4%, 어떤데는 3.6%인지 도대체 알 수가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발하지 않을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앞에서도 지적된 바입니다마는, 교원 봉급이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봉급이 만약 급격 하게 상승하면 경직성 때문에 사실 예산 운용이 지역에 따라 상당히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 다.

세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정부도 그것을 알고 국회에 던진 것이 아닌가 하 는 의심이 듭니다.

지금 이 법안의 문제를 가능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체 법안을 김영숙 의원님께서 고민 고

민하셔서 발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지방 정부의 책임과 권한의 괴리 문제는, 김영숙 의원님 안을 보면 일단 봉급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지자체의 부담으로 증액시키는 것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결국 교육 환경 개선에 있어서 지자체의 역할이 앞으로 점점 더 커가야되고 커지게 하는 방안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를 보았을 때는 경직적인 교원 봉급을 부담하는 것보다는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해 부담 하는 것이 보다 합당하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김영숙 의원님 안에 보 다 더 개선된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로 제기한 지자체 간 부담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권철현 의원님이 잘 지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영숙 의원님 안에 권철현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최대한 수용해서 논의한다면 그 문제도 어느 정도는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 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근본적으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시켜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인들은 역할이 없는데 지자체에 자꾸 부담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제가 교육 환경 개선에 지자체가 돈을 쓰게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도 일단 교육 환경 개선에는 지자체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고 그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그만큼 많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볼 때 교원 봉급의 경우에도 만약 지자체에서 부담하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교원들이 중앙 공무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 공무원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 니다.

이것은 여러 교직 단체들에서 반발이 있고 또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시행은 어렵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의 핵심이 결국 교육부가 지자체에 권한을 많이 넘겨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 교육청에도 넘겨줘야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차관 한번 답변해 보시

지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야 될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은 부담하면서 실질적인 통로가 없었던 게 사실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법을 제출하면서 첫째, 지금 법률에서는 전입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전출금을 낼 때는 저희들이 사전에시·도와 서로 절차적으로 충분하게 협의해서 용도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규정하려고하고요.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하는 게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보는 시각 의 차이입니다.

○**이주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앞부분인데,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한테 교원 봉급을 내라고 하면 그냥 경직적으로 나가 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김영숙 의원 안처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쓰라고 하면 지자체가 협의하기를 원할 것이고, 협의에 따라서 지자체의 수요를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 다.

특별교부금은 앞서 최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전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특별교부금은 그 야말로 특별한 경우를 대비해서 마련된 교부금인 데요.

물론 이 부분을 지금 축소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모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축소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실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와 집행할 당시를 보면 대개 1년간의 시차가 생기는데,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다든지 정책적으로 중요하지 않았던 부분이 실제 중앙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할때 국가적인 필요에 의해서 시·도교육청에서 집행할 부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 부분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호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는데요.

사실 이런 큰 난제를 거의 해결하지 못하시고 국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더군다나 예산 심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예산을 거기에 짜 맞추어 넘 겨서 지금 이것을 국회가 제한된 시간 내에 어떻 게 해결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있습니 다. 그것은 아시겠지요?

이군현 위원이 아까 제시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과거의 안에서 유효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고육지책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된 결과에 대해서 유감 표시를 했고요. 내용적으로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16대국회, 17대 국회 그간의 정치 일정 상황 이런 것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법은 금년 말까지 개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 간의 토론을 거쳐서 이번 회기 중에 마무리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이주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이인영 위원 우선 조금 전에 교육지자체가 전출금을 낼 때 대통령령에 용도까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긍정적일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지자체장이 공약 사업으로 교육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왜곡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통제장치 없이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통제장치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치 않으면 어쨌든 올바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그런 점도 유념하 겠습니다.

O이인영 위원 그리고 김영숙 의원님 안을 제가 검토해 봤는데,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국가 부담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 맞는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더라 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하고 있고, 특히 해당 지역 학생들에게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또 다른 한편에서는 타 당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적 극적으로 검토되었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안이 잘못 처리되면 지방자 치단체의 재정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현실적 으로 교육 재원을 마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 습니다.

또 한 가지, 6월에 해당 상임위에 결산을 보고 하는 부분들을 제안하셨는데 찬반을 떠나서 일단 행자부에서 교부금을 주는 부분들을 행자위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우리가 형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결산하는 시점이 불일치하는 문제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또 감안해서 법 조항 문제들은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보류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 혹시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큰 원칙 두 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부금이라는 예산이 실제 시·도에서 편성되다 보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자체 예산과 또 다른 예산이 섞여서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결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한 안을 보시면 결산은 안 하지만 기본적인 큰 흐름에 대한 것은 국회에 보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두 번째는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 재정 구조가 기본적으로 저희와 거의 유사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거의 맞추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O이인영 위원 그다음에 정책사업에 대한 보통 교부금의 기준마련 필요성과 관련해서 지방재정 교부금 중에 보통교부금의 교부기준에 있어서는 교부 시에 특정한 용도 또는 목적을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서 총액으로 교부해서 지방자치 단체들이 각각의 지역여건에 맞게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이야기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중앙정부의 지방이양사업도 확대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앞에 다른 분들도 지적하셨 습니다마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소외계층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포함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거든 요. 교육복지 내지 특수교육, 평생교육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많아지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이양으로 정책적인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사업의 불안정성이 증대될 수있고 연계성이 방기될 수 있는 측면들에 대해서방지하지 않고 그냥 갔을 경우에는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교육자치 이런 데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상의 이유나 혹은 소홀히 할 수 있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거든 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옳으신 지적이라 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지방에 위임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국가가 챙겨야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특별교부금이 어떤 경우에는 시·도 실정에 따라서 정말 자기 시·도의 재원으로는 하기 어려운 현안사업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을 감안하겠습니다.

O이인영 위원 수석전문위원도 아까 검토보고서 보고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수정안으로 제기했던 문제의식 있지 않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초, 자치단체별 내역과 관련 자료를 작성해서 이를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는 규정, 이런 류의 것들을 문제 의식을 갖고 삽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을 저희들 검토해서 수용할 부분은 과감하게 수용하겠습니다.

O이인영 위원 그리고 결산 과정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교육청의 사업을 평가하고 여타 중앙정부의 행·재정적인 지원을 차등화할 수 있는방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포함시키는 것은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내용이 시·도 평가와 관련된 부분인지······ ○이인영 위원 차등 지원과 관련해서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저희들이 현재는 각 시·도를 2년마다 평가해서 평가에 관련된 예 산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평가결과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신가요?

○이인영 위원 그런 것이지요. 법 개정 조항에 혹은 시행령 개정하는 과정에서 포함하면 어떠냐하는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검토해 보겠습니

다마는 제 기억으로 그 부분은 초·중등교육법에 학교평가나 이런 평가에 관한 언급이 있기 때문 에 어느 쪽에 넣는 것이 좋은지 따져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특별교 부금의 정책사업 중 많은 사업이 저소득층의 학 비지원라든가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사업, 특수교육 환경개선사업 그리 고 특수교육 취학편의지원, 만 5세 무상교육지원, 평생학습도시사업,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비 지원 이런 저소득 소외계층과 관련된 사업이 많 으니까 급격하게 이양하면서 생길 수 있는 안정 성이나 연계성이 저해될 수 있는 소지들을 줄여 내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저는 특별교부금 자체가 그런 측면에서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 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던 것도 연례적으로 특별교부금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문제가 있으니까 일반예산으로 편입하자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런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 자체를 축소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김영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했던 2건의 법률안과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차관을 비롯한 교육인적자원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出席委員(18人)

권 철 현 구 논 회 김 영 숙 백 원 우 복 기 왕 안 상 수 유 기 홍 이 군 현 이 주 호 이 인 영 정 몽 준 정 봉 주 조 배 숙 진수희 최순영 지 병 문 최 재 성 황 우 여

○請暇委員(1人)

박 창 달

○出席専門委員

 수 석 전 문 위 원
 류 충 현

 전 문 위 원
 천 병 호

○政府側參席者

교육인적자원부

, _ , , _ ,				
부 총 리 교육인적자원부	겸 장관	안	병	영
차		김	영	식
기 획 관 리 실	장	구	관	서
교육복지심의] 관	정	석	구